

【 20 】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6. 10.

제출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법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하는등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 가. 방법원의 지서 또는 파출소 파견 근무제 폐지(안 제4조의 2)
- 나.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의 개정(제5조 제1항(별표))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구 분	경 노 무
직 명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의2(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u>  <u>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법원을 지서</u>  <u>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 하게 할 수</u>  <u>있다.</u>	<u>〈삭 제〉</u>																		
<b>【별 표】</b>  <u>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u>  <u>근무상한연령표</u>	<b>【별 표】</b>  <u>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u>  <u>근무상한연령표</u>																		
<table border="1"> <tr> <td>1 종</td> <td>2 종</td> <td>경 노 무</td> <td>근무상한연령</td> </tr> <tr> <td>방법원</td> <td></td> <td></td> <td>53세</td> </tr> <tr> <td></td> <td></td> <td>사 환</td> <td>58세</td> </tr> </table>	1 종	2 종	경 노 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53세			사 환	58세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경 노 무</td> </tr> <tr> <td>직 명</td> <td>사 환</td> </tr> <tr> <td>근무상한연령</td> <td>58세</td> </tr> </table>	구 분	경 노 무	직 명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1 종	2 종	경 노 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53세																
		사 환	58세																
구 분	경 노 무																		
직 명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p>비고 : 방법원은 조례 제1246호(1989년 2월 4일 공포) 시행 당시 재직중 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 “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 경기”

#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 (033) 42-5101 / 달달 박경열

문서번호 자치 12101 - 1083

시행일자 1996. 4. 18. (년)

(경 유)

받 침 조	음	받는곳 참조	보수전송
			증신자 410-1 전모번호 5774

## 참조

## 참조

선결	파 기	<u>Seoul</u>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36. 4. 18.	결 재	제 78	<u>✓</u>
	번호	5374 (578)	재		
처리 과		<u>법무부</u>	공 람		
담당자		<u>이기</u>			

## 제 목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 내무부 지공 12101 - 189 ('96. 4. 15)호와 관련임.
  -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문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법원의 경찰관서 과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법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등의 방법원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해당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공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1부. 끝.

# 기 도 지



卷之三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구 분	1 종	경 노 무
직 명	지 도 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58세

비고 : 지도원은 조례 제 호(1996년 월 일 공포) 시행 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 (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지 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p> <p>[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1 중</th><th>경노무</th></tr> </thead> <tbody> <tr> <td>직 명</td><td>방법원</td><td>사환</td></tr> <tr> <td>근무상한 연 령</td><td>53세</td><td>58세</td></tr> </tbody> </table> <p>비고 : 방법원은 조례 제 호 (1989년 월 일 공포) 시행 당시 재직증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구 분	1 중	경노무	직 명	방법원	사환	근무상한 연 령	53세	58세	<p>&lt;삭 제&gt;</p> <p>[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1 중</th><th>경노무</th></tr> </thead> <tbody> <tr> <td>직 명</td><td>지도원</td><td>사환</td></tr> <tr> <td>근무상한 연 령</td><td>58세</td><td>58세</td></tr> </tbody> </table> <p>비고 : 지도원은 조례 제 호 (1996년 월 일 공포) 시행 당시 재직증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구 분	1 중	경노무	직 명	지도원	사환	근무상한 연 령	58세	58세
구 분	1 중	경노무																	
직 명	방법원	사환																	
근무상한 연 령	53세	58세																	
구 분	1 중	경노무																	
직 명	지도원	사환																	
근무상한 연 령	58세	58세																	